

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

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지난 5월 31일 서울시는 “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.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,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”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.

사이렌까지 울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, 정작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

등 주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구체성이 결여된 재난문자에 시민 혼란은 가중되고 기관 간에는 오발령 책임 공방이 일었습니다.

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(휴대폰),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·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서울시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표준 문안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꼭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한 원인입니다.

이에 위급재난문자 전파 시 ▲재난 예보·경보 발령 이유 ▲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▲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및 장소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「서울특별시 재난 예보·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하원칙 재난 예보·경보 매뉴얼 정비를 통해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·정확한 재난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최근 통신업계도 5세대 이동통신(5G)은 물론, LTE 단말기도 157자까지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는 등 추가로

필요한 내용을 재난문자에 담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었습니다.

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,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,
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